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429호 2022년 11월 14일(월)

공 고

- 동절기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일시중지 공고 2

입법예고

- 속초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

동절기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일시중지 공고

「속초시 수도급수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중인 상수도 개인급수공사에 대하여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시 중지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4일

속 초 시 장

1. 중지기간 : 2022. 12. 12. ~ 2023. 3. 1.
2. 중지내용 :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
3. 중지사유 :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 및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
4. 문 의 처 :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급수팀(☎ 033-639-2532)

속초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11월 11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속초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의 시정 참여 기회제공으로 지역 사회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안)

나.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함.(안 제2조)

다. 재정지원을 위한 절차 및 사업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3조)

라.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)

마.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

항을 규정함.(안 제5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·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

- 주 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
- 연락처 : 전화 033-639-2132 / 팩스 033-639-2590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후생팀(☎033-639-213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속초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사업)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 제 14조에 따라 속초시 행정동우회(이하 “동우회”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2.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
3.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 및 공익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3조(사업계획의 승인) 동우회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4조(실적보고 등) ① 동우회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금의 환수)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준용)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「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